

임원직무청렴계약제운영지침

제정 2006. 12. 29 지침 제70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투명·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연구원의 상근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직무청렴계약의 체결) ① 연구원 임원은 직무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직무청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의 임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이하 “이사회”이라 한다) 이사장과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은 별표의 임원직무청렴계약서에 당사자가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직무청렴의무가 있는 임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직무청렴의무의 내용) 연구원의 임원은 청렴의무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금지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제6조 (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 계약을 체결한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한다.

I. 지침

- 제7조** (위반시 제재 등) ①연구원은 이사회에서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심의·의결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②임원이 계약을 위반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단서조항)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 ③(계약 위반 및 제재적용 규정) 제6조 및 제7조 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 및 제재 기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을 적용도록 한다.

(별표 1)

임원직무청렴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부패없는 투명한 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호합의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을”은 기관을 경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부정행위 등과 같은 부패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며 다음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 “을”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계약일자 : 년 월 일

(갑) : 기관명 / 직위 / 성명 (서명)

(을) : 기관명 / 직위 / 성명 (서명)